

지회규정

1. 본 지회 규정은 학회정관 및 규칙에 명시한 지회설치에 따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정한다.
2. 설치목적은 학회정관 제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명·전기설비·학술 및 기술의 발전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.
3. 설치근거는 학회정관 제3조에 의거한다.
4. 지회활동(사업내용)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조명 및 전기설비 조사 및 연구활동
 - ② 학술, 기술발표 및 기술강연회 개최
 - ③ 회원의 자질향상과 기술연마를 위한 현장 견학 및 시찰
 - ④ 각 분야별 세미나, 심포지엄, 좌담회, 간담회 등 개최
 - ⑤ 지회총회 및 제행사 개최
 - ⑥ 회원의 연구장려 및 표창
 - ⑦ 해당지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기타
5. 지회설치요건 및 관할구역은 학회규칙 제7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.
6. 지회임원에 관한 사항은 학회규칙 제7장 제13, 14조에 따른다.
7. 기타 지회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회규칙 제7장에 따른다.
8. 지회설치가 확정된 지회에 대하여는 창립 및 정기총회 개최시 지회경비로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87년 4월 8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